

[일련번호 : 78]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동일한 용역대가 중복 지급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毀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3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수리비 지급 외 1건과 관련하여, 업체에 용역대가를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붙임서류를 근거로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용역대가 중복집행 내역

연번	지급일	적요	금액(원)	거래처	부적정 내역
1	20230221	○○공원 놀이시설 수리비 지급	4,023,000	주식회사 ○○○	(대가지급 완료)
	20230411	○○공원 놀이시설 보수비 지급	3,991,900	주식회사 ○○○	2023.2.21. 업체에 대가를 기지급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역(불입서류 동일)에 대하여 중복지급
2	20231017	○○공원 회랑 라운지 유리 정비비 지급	1,694,000	주식회사 ○○○	(대가지급 완료)
	20231023	○○공원 회랑 라운지 유리 정비비 지급	1,694,000	주식회사 ○○○	2023.10.17. 업체에 대가를 기지급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역(불입서류 동일)에 대하여 중복지급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중복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